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제출 예정일
2023년 10월 30일

자연과학캠퍼스 제출 예정일
2023년 10월 30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가결 시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일
2023년 11월 5일

1. 추진 배경 및 제안 이유	2
2. 주요 내용	3

2023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 발의

조준범·박근아·정지민·이진유·현지윤·정진우·박성연·박보연·
조성재·길도훈·정영기·김용성·김동우·김채연·임현민·박진아

1. 추진 배경 및 제안 이유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은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 학과 및 전공 학생회, 특별기구 등 본회를 대표하는 모든 학생 자치기구의 존립 근거로, 본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최상위규범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가 분화된 회칙을 사용함에 따라 여러 불편이 초래되었고 1992년 이후 공동회칙 제정을 위한 여러 과정을 거친 결과 2022년,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을 통해 통합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통합’에 초점을 맞춘 회칙으로, 학생사회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해 일부 조항의 수정 내지는 추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내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성균관대학교 제55대 총학생회장단과 2023 회칙개정소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방향성을 담은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2. 주요 내용

□ 개정 기초

본 개정에서는 대의기구 출결에 대한 구속 조항을 신설해 무단 결석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고,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 채택에 따른 재정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해 재정 투명성과 학우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 대의기구 출결 형식 강화

1. 대의원의 출결 조항 신설

현행 회칙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 대의기구의 대의원이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불이익이 주어지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022년 통합 회칙개정을 통해 연석학생대표자회의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해 출석을 대신하는 조항이 있으나(제42조제3항),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석하여도 별다른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회의가 수차례 정회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회의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본회 대의기구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회의체 출석을 대의원 개인의 사명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그에 준한 책임감이 부여될 수 있도록 회칙에 그에 걸맞는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결석계 제도를 신설하고, 위임장 혹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는 경우 회의록을 통한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하여 출결과 관련한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고자 한다. 또한, 연합대회 및 전학대회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자 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한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해당 기준을 공식

선출직으로 하여 범위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확대운영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에 연학대회의 구성원은 전원 확대운영위원인 관계로 위임장 조항을 삭제하였다.

학교명	출결 관련 조항	
성균관대학교	서류 요구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기존) 위임장 제출 → (개정) 위임장/결석계 제출 - 중앙운영위원회: (기존) 없음 → (개정) 결석계 제출
	결석 패널티	(기존) 없음 → (개정) 무단 결석한 대의원 공개
고려대학교	서류 요구	개요일로부터 3일 이내 결석계 제출
	결석 패널티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결석한 대의원 공개 - 중앙운영위원회: 3회 이상 결석할 시 결석 사실 공개
한양대학교	서류 요구	개의 전까지 결석 사유서 제출
	결석 패널티	무단 불참 시 사과 및 경위서 작성 후 공개
경희대학교	서류 요구	결석계 제출
	결석 패널티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1회 이상 무단 불참 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중앙운영위원회: 연속 3회 이상 불참 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류 요구	개요일로부터 3일 전 ~ 3일 후까지 결석계 및 지각·조퇴 사유서 제출
	결석 패널티	1회 무단 불참 시: 사과문 게재 및 다음 회의 공개 사과 2회 무단 불참 시: 일정 기간 자격 박탈 3회 무단 불참 시: 해당 연도 회의 구성원 자격 박탈

2. 대의원의 의무 형식 통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관련 회칙에 존재하는 ‘대의원의 의무’ 조항을 중앙운영위원회 관련 회칙에 추가하여 형식을 통일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장에 있던 ‘대의원의 의무’ 조항에 있던 위임장 관련 내용을 신설된 출결 조항으로 이전하였다.

3. 임기 중 사퇴 시 보고 조항 신설

최근 모 단위 학생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였으나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기입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생회장단을 포함한 전학대회 대의원의 사퇴는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

[출결 조항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p>[연석학생대표자회의] 제42조 (대의원의 의무)</p> <p>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p> <p>②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p> <p>③ 대의원이 연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자신이 대표하는 단위 내 1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이미 대의원인 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으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위임할 수 없다.</p>	<p>[연석학생대표자회의] 제42조 (대의원의 의무)</p> <p>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p> <p>②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p> <p>③ 신설 제43조로 이전</p> <p>④ 대의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 제43조 (대의원의 출결)</p> <p>① 대의원이 연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사유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p>② 결석계는 연학대회 개회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p> <p>③ 대의원이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p>
<p>[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51조 (대의원의 의무)</p> <p>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p>	<p>[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51조 (대의원의 의무)</p> <p>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p>

<p>②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p> <p>③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자신이 대표하는 단위 내 1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이미 대의원인 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으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위임할 수 없다.</p>	<p>②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p> <p>③ 신설 제52조로 이전</p> <p>④ 대의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 제52조 (대의원의 출결)</p> <p>①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자신이 대표하는 단위 내 1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이미 대의원인 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으며, 확대 운영위원회는 위임할 수 없다.</p> <p>② 대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을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사유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p>③ 위임장과 결석계는 전학대회 개회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p> <p>④ 대의원이 위임장이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p>
<p>[연석중앙운영위원회]</p> <p>(신설)</p>	<p>[연석중앙운영위원회]</p> <p>신설 제60조 (위원의 의무)</p> <p>① 연석중앙위원회는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p> <p>② 연석중앙위원회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p> <p>③ 연석중앙위원회가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p>

	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p>신설 제61조 (위원의 출결)</p> <p>① 연석중운위원이 연석중운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사유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p>② 결석계는 연석중운 개회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p> <p>③ 의결권을 가진 연석중운 단위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p>
[중앙운영위원회] (신설)	<p>[중앙운영위원회]</p> <p>신설 제67조 (위원의 의무)</p> <p>① 중운위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p> <p>② 중운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p> <p>③ 중운위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p>
	<p>신설 제68조 (위원의 출결)</p> <p>① 중운위원이 중운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사유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p>② 결석계는 중운 개회 하루 전 23시 59분</p>

	<p>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p> <p>③ 의결권을 가진 중운 단위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p>
<p>[중앙운영위원회 확대회의]</p> <p>(신설)</p>	<p>[중앙운영위원회 확대회의]</p> <p>신설 제74조 (위원의 의무)</p> <p>① 확운위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p> <p>② 확운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p> <p>③ 확운위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 제75조 (위원의 출결)</p> <p>① 확운위원이 확대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사유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p>② 결석계는 확대회의 개최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p> <p>③ 확운위원이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p>
<p>[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p> <p>제101조 (학생회장단)</p> <p>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은 각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소속 회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p> <p>②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은 연학</p>	<p>[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p> <p>제101조 (학생회장단)</p> <p>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은 각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소속 회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p> <p>②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은 연학</p>

<p>대회 대의원, 전학대회 대의원, 연석중앙운영위원, 중앙운영위원, 확대운영위원이 된다.</p> <p>③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의 세부사항은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p>	<p>대회 대의원, 전학대회 대의원, 연석중앙운영위원, 중앙운영위원, 확대운영위원이 된다.</p> <p>③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의 세부사항은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p> <p>④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p>
<p>[학부·학과·전공 학생회] 제107조 (학생회장단)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은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소속 회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은 연학대회 대의원, 전학대회 대의원, 확대운영위원이 된다. ③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의 세부사항은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p>	<p>[학부·학과·전공 학생회] 제107조 (학생회장단)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은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소속 회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은 연학대회 대의원, 전학대회 대의원, 확대운영위원이 된다. ③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의 세부사항은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④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p>
<p>[특별기구] 제114조 (특별기구장단의 선출) ① 특별기구장단은 각 특별기구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기구장단의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독립기구장단을 제외하고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②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장단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p>	<p>[특별기구] 제114조 (특별기구장단의 선출) ① 특별기구장단은 각 특별기구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기구장단의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독립기구장단을 제외하고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②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장단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 및 부속기구 회장 혹은 부회장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p>

	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	--

□ 재정 관련 조항 보완

1. 회계연도 조항 수정

현행 총학생회칙 제120조 (회계연도) 제1항에는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본회의 재원은 매년 1학기과 2학기과 나누어 집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학기: 1학기 개강일부터 하계 방학까지

2학기: 2학기 개강일부터 동계 방학까지

그러나 이 경우, 신입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시작되는 2학기 중강일 다음 날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 전날까지의 기간이 충돌하여 정기 전학대회에서 예·결산안을 심의받을 시 이 기간을 제대로 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현실에 맞게 회계연도 회기에 1학기 개강 이전의 기간을 추가해 회계연도를 ‘초반기’, ‘중반기(1학기)’, ‘중반기(2학기)’로 나누어 정립하였다.

2. 자치회비 조항 신설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이 채택되면서 기층단위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납부받는 학생회비를 ‘자치회비’라고 명명함에 따라 총학생회칙 제119조 (학생회비)에 자치회비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다.

3. 단위기구 재정 조항 신설

기존 단위기구 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재정 조항을 신설해 학생회비와

자치회비를 납부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보완하였고, 학생회의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위기구 학생회칙으로 정하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재정 조항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p>제120조 (회계연도)</p> <p>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p> <p>② 본회의 재원은 매년 1학과 2학기로 나누어 집행한다.</p>	<p>제120조 (회계연도)</p> <p>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p> <p>②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한다. 단, 진행 중인 사업의 재정이 복수의 기간에 걸쳐 집행될 경우, 회계담당자의 판단하에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초반기: 임기 시작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p> <p style="padding-left: 20px;">2. 중반기: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p> <p style="padding-left: 20px;">3. 종반기: 2학기 개강일부터 임기 종료일까지</p>
<p>제119조 (학생회비)</p> <p>① 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p> <p>② 학생회비의 예·결산, 심의 및 조정, 집행 등의 모든 사항은 각 캠퍼스회 내에서 소속 캠퍼스회 회원이 납부한 학생회비로만 이루어진다.</p> <p>③ 학생회비는 캠퍼스회,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에 배분되며, 학생회비 배분안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전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p> <p>④ 학생회비의 인상·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학대회에서 학생회비의 조정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p>	<p>제119조 (학생회비)</p> <p>① 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p> <p>② 학생회비의 예·결산, 심의 및 조정, 집행 등의 모든 사항은 각 캠퍼스회 내에서 소속 캠퍼스회 회원이 납부한 학생회비로만 이루어진다.</p> <p>③ 학생회비는 캠퍼스회,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에 배분되며, 학생회비 배분안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전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p> <p>④ 학생회비의 인상·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학대회에서 학생회비의 조정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p> <p>⑤ 본회의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소속 회원으로</p>

	<p>부터 납부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자치회비”라 한다.</p>
	<p>[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신설 제102조 (개정) 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제119조 제3항에 의해 본회의 학생회비에서 그 기구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을 배분받는다. ②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제1항에 의해 배분받은 학생회비를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에 배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상호간 정한다. ③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제119조 제5항에 의해 자치회비를 납부받을 수 있다. ④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정하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p>
	<p>[학부·학과·전공 학생회] 신설 제108조 (개정)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제119조 제3항에 의해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가 배분받은 본회의 학생회비를 배분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상호간 정한다.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제119조 제5항에 의해 자치회비를 납부받을 수 있다. ③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으로 정하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p>
<p>[특별기구] 제113조 (개정) ①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만이 본회의 학생회비에서 그 기구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을 배분받는다. ② 그 밖의 특별기구들은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첨부하여 중앙운영위</p>	<p>[특별기구] 제113조 (개정) ①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만이 본회의 학생회비에서 그 기구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을 배분받는다. ② 그 밖의 특별기구들은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첨부하여 중앙운영위</p>

<p>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고 전학대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학생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비 배분안에 의거하여 학생회비를 배분받을 수 있다.</p>	<p>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고 전학대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학생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비 배분안에 의거하여 학생회비를 배분받을 수 있다.</p> <p>③ 특별기구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기구 회칙으로 정하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p>
---	--

□ 기타 조항

1. 단위기구 및 특별기구 회칙개정 시 보고 조항 신설

단위기구 및 특별기구의 회칙이 개정 혹은 제정된 경우 형식상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 안건을 통해 보고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혹시 모를 충돌 조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칙 내용 공유 조항 추가

총학생회칙은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 학과 및 전공 학생회, 특별기구 등 본회를 대표하는 모든 학생 자치기구의 최상위규범이다. 따라서 비단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뿐만이 아닌 모든 기층단위 학생회가 학생회를 운영하며 필히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학생사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총학생회칙 내용 공유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였다.

[기타 조항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p>[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제102조 (독립성의 보장) 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과대</p>	<p>[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제102조 (독립성의 보장) 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과대</p>

